서울을 바라봅니다
시민을 생각합니다

시장 제출 의안 철회

의 장

No.44

결재
2020.02.17
의장

2020. 2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시장 제출 의안 철회

제290회 및 제291회에 접수되었던 시장 제출 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(기획담당관-2210, 2444)이 있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코자 함

☐ 철회요청 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제출자 (소관위원회)	의 안 명	사 유	회부일자	철회요청 일자
1 (1178)	시 장 (보건복지)	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	○ 민간위탁사무 유형 변경(사무형 → 시설형)하여 제29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므로, 제290회 정례회 제출 안건은 철회하고자 함	2020. 10.22.	2020. 2.12.
2 (1179)	시 장 (보건복지)	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	○ 관계법령 변경(정신보건법 제8조 →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)하여 제29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므로, 제290회 정례회 제출 안건은 철회하고자 함 *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(국립·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	2020. 10.22.	2020. 2.12.
3 (1322)	시 장 (기획경제)	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및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운영 조례안	○ 운영 방식 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29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철회하고자 함	2020. 2.5.	2020. 2.14.
4 (1331)	시 장 (행정자치)	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	○ 통일문화센터(가칭) 조성대상지 중 매각의사를 철회하였던 토지소유자(강북구 수유동 527-39)가 다시 매각 의향을 밝힘에 따라 매매 재협의 추진을 위해 안건을 철회하고자 함	2020. 2.5.	2020. 2.14.

2020. 02. 17 의장

☐ 철회절차

○ 본회의 및 위원회 의제가 되기 전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, 그 청구만으로 철회 가능

☐ 조치사항

○ 철회를 허가하고 철회 사실을 시장과 각 소관위원회(보건복지, 기획경제, 행정자치)에 통보

붙임 : 1. 철회 요청 공문 2부.
2. 관련 안건 4부. 끝.

2020. 02. 17
의장